

사료수입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서류검정: 3일 정밀검정 또는 표본검정: 18일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고 구분	[] 사료의 안정성 및 품질검정 [] 소해면상뇌증(BSE) 관련 서류검정	신고사료 구분	[] 단미사료 [] 보조사료 [] 배합사료
-------	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자가제조용 사용 여부	[] 자가제조용 [] 판매 또는 공급용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 고 인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
	상호	업종
	주소	
	전화번호:	(FAX:)

제 조 업 자	제조업등록번호	대표자
	상호	업종
	소재지	
	전화번호:	(FAX:)

신	사료의 명칭		성분등록번호			
	신고 총 수량 / 중량 / kg		HSK번호			
	제품명(영문명)		용도 및 형태			
고	등록성분명 및 그 함량					
	유통기한 년 월 일(제조일)부터 년 월 일까지		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			
	생산국(제조국)		수출국			
내	제조회사명		소재지			
	수출회사명		소재지			
용	수송편 종류및 수송편명		수입항		입항일 년 월 일	
	보관창고 (전화번호:)		화물관리번호		선하증권(B/L)번호	

「사료관리법」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(서명 또는 인)

사료수입 신고단체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료성분등록증 사본(「사료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2. 사료검정증명서[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] 3.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. 상업송장(INVOICE)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
------	--

처 리 절 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